

통신사 기사 게재와 명예훼손 미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법 · 판례

염 규 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언론법 교수

이 논문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월터 크롱카이트 신문대학에서 언론법을 강의하고 있는 염규호 교수가 특별 기고한 것이다. 필자는 이와 유사한 주제의 논문을 「Journalism Quarterly」(1993년 가을호)에 발표한 바 있다. 편집자 주

크고 작은 대부분의 미국 언론기관은 AP, UPI와 로이터 같은 주요 통신사를 통해서 뉴스를 수집한다.

또한 다수의 언론기관은 뉴욕타임스나 로스앤젤레스/워싱턴포스트가 운영하는 통신사를 이용해서 AP 혹은 UPI 같은 뉴스 통신사의 기사취재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사들이 매일 처리하는 엄청난 뉴스의 양을 볼 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들이 명예훼손적인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거의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통신사 자체뿐만 아니라 그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까지도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¹⁾

1990년에 있었던 McKinney v. Avery Journal, Inc. 사건²⁾이 좋은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Avery Journal 신문에 실린 통신사 제공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기사는 원고가 런던에서 한 모르몬전도사를 유괴 강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뉴스의 화제가 되었다」고 묘사하였다.³⁾ 이 신문기사는 통신사들이 제공한 것으로, 특히 AP 통신사의 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⁴⁾

노스캐롤라이나주 고등법원은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 원칙에 의해, 피고 신문사가 문제의 기사를 신문에 실은 것이 과실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신문사에 대해 약식 판결을 내렸다.⁵⁾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의 기본 정의는 명망있는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정확하게 게재하는 것이 결코 명예훼손법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악의」나 「과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명예훼손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사건에서 원고가 사적 인물인 경우에는 과실을 공적인 인물이나 정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악의」를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 소송사건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실질적인 악의」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상의 용어로서 그 의미는 언론이 문제의 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혹은 그 기사의 허위여부를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서 기사를 신문이나 방송에 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서 통신사기사 면책사유원칙은 통신사기사로 인한 수많은 명예훼손소송사건을 피할 수 있는 미국 언론기관들의 효과적인 「안전장치」로 사용되어 왔다. ⁶⁾

사실 미국의 저명한 언론변호사 Bruce Sanford는 이 면책사유원칙이 미국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상당히 확고한 위치를 점한다」고 특징지었다.⁷⁾ 그러나 지금까지 이 통신사기사

면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주요언론법 교과서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지극히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매우 널리 이용되는 전문적인 명예훼손 관련 저서들의 이것에 대한 관심은 한 마디로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법률학술지에 나온 대부분의 논문들도 이 명예훼손 면책에 대해 현저할 정도로 제한적인 분석만을 했을 뿐이다. 즉 한 두 개의 관련 판결에 대한 평석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논문 중 몇몇은 이미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거의 가치가 없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통신사 기사 게재」의 명예훼손 면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미국법상 어떻게 생겨났으며, 현재 미국의 법원이 어떻게 인정하고있으며, 한편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언론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통신사기사 면책사유와 「실질적 악의」 원칙과의 관계, 1964 년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8) 이전과 이후의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의 적용, 그리고 이 관습법적인 면책사유가 언론의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의 시초

영미 명예훼손법상 명예훼손적인 언사를 다시 게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개별적인 하나의 명예훼손죄가 되며, 따라서 다시 게재를 한 사람은 그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이는 그 명예훼손기사의 원 출처를 밝혔는가에 상관없이 혹은 그 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한 견해를 그 기사와 함께 게재했느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한편 이처럼 엄격한 관습법적인 명예훼손원칙은 중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 왔는데, 그것은 입법절차나 사법재판에서 행해진 명예훼손적인 언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정보도 특권」이라는 명예훼손면책에 의하면, 「공적인 조치나 절차 혹은 일반의 관심사를 다루는 모임으로써 공개적인 경우, 이에 관한 보도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만약 그 보도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보도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요약이라면 특권적인 것으로서 면책이 되는 것이다.」 9)

공정보도특권은 정부에 관련된 회의 등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에 국한하여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적인 통신사 기사를 일반의 언론기관이 다시 게재하는 것에는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통신사 기사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요책으로서 미국의 법원은 「통신사 기사 면책」을 시도했다.

최초로 통신사 기사 면책을 인정한 것은 1933 년의 플로리다주 언론관계 명예훼손사건인 Layne v. Tribune Co.¹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Tampa Morning Tribune 신문이 AP 와 Universal Service¹¹⁾가 제공한 뉴스 기사를 다시 게재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 기사는 원고가 연방주류 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술을 소지한 죄로 기소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실은 오보였다.¹²⁾

이 사건에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문제의 기사에 언급된 죄 등으로 해서 원고가 기소당했다는 허위보도를 게재한 것이 본질적으로 명예훼손적임을 인정했다.¹³⁾ 그러나 동

법원은 명예훼손법상의 원칙인 재게재금지를 언론기관이 통신사 기사를 다시 게재한 그 사실 자체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Layne 사건 담당법원은 신문사가 「이름있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허위이지만 「믿을만한 뉴스기사」를 다시 게재하는데 있어 「발행인」이 그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재게재하면서 「과실적이고 무모하게 혹은 부주의하게 행동했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자체가 명예훼손의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¹⁴⁾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즉, 엄격한 재게재금지라는 관습법상의 원칙은 피고 신문사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통상적으로 신문에 게재함으로 해서」 생기는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법원은 이 원칙이 「순수한 뉴스기사가 단지 분명히 믿을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그것을 재게재하는데 있어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태도가 없고 악의나 원고를 해치려는 의도도 없으며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손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¹⁵⁾

본 사건 관련 사실에 대해 재게재금지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함을 설명하면서 플로리다주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느 신문에게라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뉴스 기사를 계속하여 게재하면서 정평있는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 모두에 대해 하나 하나 사실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¹⁶⁾

Layne 사건은 통신사 기사 관련 명예훼손사건에서 가장 잘 인용되는 주요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의 판례기원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Sullivan 사건의 「실질적 악의」 원칙이¹⁷⁾ Gertz 판결의 「과실」 기준처럼¹⁸⁾ 통신사에 대한 Layne 재판의 논거를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즉 통신사 기사에 근거한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재게재는 그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을 언론이 알고 있다가 혹은 허위의 개연성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적인 인물이나 정부공무원들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름있는 통신사에 근거해서 사적인 인물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과실」이나 「엄청난 무책임」이라는 책임을 언론사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¹⁹⁾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는 1933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명예훼손법상에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적어도 13개의 지역에서 이용되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예훼손법을 주법 중심에서 연방헌법상의 법으로 바꾼 Sullivan 사건(1964) 이후에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는 점점 많은 소송사건에서 적용되고 있다.

II. 통신사 기사 면책의 명예훼손판결

1985년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통신사 기사면책사유를 채택했다. 언론사 상대의 명예훼손사건인 Appleby v. Daily Hampshire Gazette(1985) 사건²⁰⁾에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이렇게 실시했다. 즉, 「게재하기 전에 통신사 기사를 확인해야 한다면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커다란 부담을 야기시킬 것이다.

사실 확인은 시간이 걸리고 경비가 드는 것이므로 그 같은 부담을 부과하면 결국 소규모의 언론사들은 순전히 현지 지방사건뉴스만을 신문에 내야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21)는 것이다.

Appleby 사건은 1978 년에 있었던 주 경찰에 의한 Appleby 가택수색에 관한 AP 와 UPI 기사를 여러 언론사가 전재 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되었다.22)

Appleby 는 그 기사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방송국을 포함하여 수개의 언론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법원은 피고인 언론사들의 약식판결제청을 받아들였다.23)

상고심 판결에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신문사가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통신사에 의존하는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언론의 직업적인 관행들을 참고로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원은 AP 와 UPI 가 언론사들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원으로 정평이 나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신문사들이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며 통신사기사를 독립적으로 직접 확인치 않고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신문사들의 관행임을 실시했다.24)

Appleby 사건 담당법원은 또한 통신사 기사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언론사들로 하여금 자체 검열을 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25)

법원은 작은 신문사에 미치는 확인 의무의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면서 이들 신문사들이 별 수 없이 「순전히 지역적인」 기사만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언론사들이 기사의 지역적인 근접성에 따라 확인 가능한 통신사기사와 확인이 불가능한 기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은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기사가 확인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판단이 재판에서 인정되리라고 완전하게 자신하는 신문발행인은 지극히 드물다. 따라서 신문사에게 확인할 수 있는 보도인지 할 수 없는 보도인지를 구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자체검열>과 똑같은 위험성을 부과하는 것일 것이다. 」 26)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통신사 기사가 원천적으로 도저히 사실 같지 않거나 혹은 피고 언론사가 그 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혹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하나의 의무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27)

통신사 기사의 확인의무는 또한 「언론사로 하여금 그 기사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기사와 무관한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동 법원은 덧붙였다.28)

Appleby 판결이 있기 2 년 전인 1983 년, 하와이주 대법원은 통신사 기사 면책을 받아들였다. Mehau v. Gannett Pacific Corp. 사건 29)에서 하와이주 대법원은 「실질적 악의」 원칙의 맥락에서 통신사 기사 면책을 분석했다. 주정부 공무원인 원고는 UPI 통신 기사에서 한 범죄조직 집단의 「대부」라고 보도되었다. 이 기사는 피고소유의 신문인 Tribune Herald 에 거의 원문 그대로 게재되었다.

담당재판부는 미국의 「주요 통신사」의 가입자인 Tribune Herald 신문이 뉴스정보 수집 자로서의 UPI 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30) 법원은 피고

신문이 UPI 기사를 게재하면서 진실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했다고 배심원들이 결정을 내릴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판시했다.³¹⁾ 법원의 판결 이유는 첫째, 피고 신문이 문제의 기사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들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것, 둘째, 신문에 실린 기사가 UPI 기사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UPI 기사에 대한 왜곡이나 과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결론짓기를 피고 신문사가 「뉴스제공자의 신뢰성에 대한 UPI의 명성에 의지할 수 있다」고 했다.³²⁾

마찬가지로 Walker v. Pulitzer Publishing Co.(1967) 사건 33)에서 미주리주에 있는 한 연방지방법원은 통신사 기사 면책을 적용했다. 법원은 St. Louis Post Dispatch 신문이 「일반에게 가능하면 신속히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명성있는 전국적인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이용했으며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라고 했다.³⁴⁾ 아울러 신문사가 문제의 AP 기사를 확인치 않았다는 점으로부터 신문사의 「실질적 악의」를 추론할 수는 없다고 부언했다. 이 사건의 소송사유는 1962년에 있었던 한 흑인학생의 입학으로 야기된 미시시피대학교 폭동에 원고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AP 기사를 피고 신문이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³⁵⁾

1977년에 푸에르토리코가 명예훼손사건에서 통신사기사 면책을 인정했다.

Torres-Silva v. El Mundo(1977) 사건 36)에서 푸에르토리코 대법원은 Torres-Silva가 UPI 기사에 언급한 뉴스 기사를 피고 신문이 게재하는데 있어 과실을 범했다는 것을 입증치 못했다고 결정했다.³⁷⁾ 문제의 기사는 원고가 마약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고 허위로 보도했던 것이다. 명예훼손적인 정보가 「믿을 만한」 통신사에서 나온 것에 주목하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획득한 정보를 신문사로 하여금 사실 확인토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배치되는 자체검열을 야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뉴스를 확인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인적인 면에서 값비싼 대가를 수반하는 것이다. 사실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꼭 있다면 기사 자체에서 그 진실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거나 혹은 특별한 여건때문에 그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때일 것이다. 」³⁸⁾

알래스카 주는 1979년에 통신사 기사 면책을 채택했는데 그 주에 있는 한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부터였다. Gay v. Williams(1979) 사건 39)에서 알래스카주법에 의해 연방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약식판결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원고에 대한 AP 기사를 피고신문이 게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악의」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⁴⁰⁾ Ketchikan Daily News에 게재된 기사에서 원고는 마약거래에 관계된 것으로 잘못 보도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연방법원은 관련된 기사들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Rosen bloom 원칙에 의한 「실질적 악의」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⁴¹⁾ 담당재판부는 알래스카주 대법원이 사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Rosen bloom의 「실질적 악의」를 계속 인정할 것이라는 결론에 근거해서 Rosen bloom 원칙을 채택했다.⁴²⁾

조지아주는 1988년에 통신사기사 면책을 인정했다. Brown v. Courier Herald Pub. Co.(1988) 사건 43)에서 한 연방지방법원은 조지아주법을 적용하면서, 「통신사 기사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론기관이 이름있는 통신사에서 온 기사를 본질적인 골자를 고침이 없이

그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게재하는 때이다... 그 통신기사 자체로 볼 때 언론사 입장에서 그 기사가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느낄 만한 점이 없다면 이 같은 명예훼손면책은 인정된다」 44)고 판시했다.

위 법원은, 통신사기사 게재 전에 각 언론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확인하라고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체검열에 우려를 표명했다. 통신사기사 면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언론기관이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의 어떠한 모순점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언론사가 기사의 허위를 알았거나 기사의 「해명되지 않는 모순점」을 발견했을 때 그 기사게재에 있어서 자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임을 연방법원은 제안했다.45)

Layne 사건에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통신사기사 게재를 명예훼손면책의 사유로 수립한 이래 플로리다주 법원들은 언론관계 명예훼손사건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이 면책사유를 적용했다.

Nelson v. Associated Press, Inc.(1987) 사건 46)은 그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Nelson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Appleby 에서 내린 통신사기사 면책결정을 「전폭적으로」 채택했다. 피고의 수정헌법 제 1 조에 근거한 관점을 분석하면서 법원은 「통신사 기사 면책은 수정헌법 제 1 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 수정조항은 언론인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과실이 아닌 뉴스 취재상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언명했다.47) Nelson 사건은 Miami Herald 신문이 관계된 것으로 AP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기사에서 원고가 그의 죽은 부인과 특이한 영적인 회합을 하고 있다고 한 남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법원은 AP 기사를 게재한 MiamiHerald 신문의 행위는 결코 명예훼손적인 과실이 아니라고 했다.

뉴욕주는 Zetes v. Richman(1982) 사건에서 통신사 기사게재를 명예훼손에서 면책의 근거로 인정했다.48) 뉴욕 주 고등법원은 1980 년 동계 올림픽게임 기념 동전을 판매하는 원고에 대한 UPI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피고 발행인의 행위를 「엄청난 무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49) 법원은 피고가 관련 기사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있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기사 발신자의 취재조사에 의지할 수 있는 제한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 고 판결했다.50)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것은 1938 년의 한 뉴욕주 고등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이다. 동 법원은 「배심원이 피고가 문제의 기사를 게재하는 데 있어서 믿을만한 통신사에서 받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고 그 같은 정보를 일상적인 뉴스전달의 관점에서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선의로 게재했다고 믿는다면 징벌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고 판시했다.51)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스캐롤라이나주고등법원은 Mckinney v. Avery Journal, Inc.(1990) 사건에서 처음으로 통신사 기사 게재가 명예훼손의 면책사유가 됨을 인정했다.52) 주 고등법원은 피고 신문이 단지 통신사 기사를 요약해서 게재했을 뿐임을 주목하면서 피고에 의한 과실적인 명예훼손을 원고가 증명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53)

D. C. 연방고등법원은 Waskow v Associated Press (1972) 사건에서 Evening Star 신문사에 대한 승소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통신사기사면책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54) 연방고등법원은 Evening Star 신문이 문제의 AP 기사를 게재하면서 진실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⁵⁵⁾ 법원은 「통신사 기사에 있어서 모순성이나 다른 실수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신문편집인들은 주요통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정확성을 의문시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⁵⁶⁾

1966년에 D.C. 연방고등법원은 다르지만 관련성 있는 맥락에서 통신사 기사 면책 권에서 유래하는 정책적인 정당성을 이용했다. Washington Post Co. v. Keogh(1966) 사건 57)에서 연방고등법원은 정기 신디케이트 뉴스보도와 기고칼럼에 「신문사가 허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사실확인 의무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⁵⁸⁾ 신문발행에 있어서 사실확인에 따른 「시간적인 소비」에 주목하면서, 법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사를 게재하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값비싼 절차나 자체검열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사실확인 책임을 신문에 부과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⁹⁾

Sullivan 사건 후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가 딱 한번 약식판결의 근거로 실패한 경우가 있다. Bessent v. Times-Herald Printing Co.(1986) 사건 60)에서 텍사스주 대법원은 약식판결을 내린 하급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⁶¹⁾ 그러나 텍사스주 대법원이 명예훼손의 원칙으로서 통신사 기사 면책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⁶²⁾ 법원은 단지 피고신문사에 대한 약식판결을 위해 제출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⁶³⁾ 법원은 UPI가 명예훼손 기사를 제공한 정보원으로 믿을 만하다는 피고신문사의 진술서만으로는 「실질적 악의」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⁶⁴⁾

Layne 사건과 Sullivan 사건 사이의 기간 동안에 오클라호마주를 포함한 몇몇 주는 명예훼손법상의 재게재금지라는 「이미 확립된」 원칙 때문에 통신사기사 면책을 채택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64년 이후 Sullivan 사건과 여타 후에 나온 관련 사건에서 비롯된 혁명적인 명예훼손법의 변화를 고려해 본다면, 엄격한 관습법적 명예훼손원칙들에 입각한 이들 초기 판결들의 선례적인 중요성은 의심스럽다. 1930년대에 조지아와 켄터키 주 대법원들이 그 원칙을 기존의 명예훼손법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연방고등법원은 각각 최근 수년 동안에 통신사 기사면책 원칙을 적용했던 것이다. ⁶⁵⁾

III. 미국 언론에 대한 통신사 기사 면책의 영향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통신사 기사 면책은 미국의 법원들이 어떻게 명예훼손법을 손상치 않고 자유로운 정보의 토론을 확대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⁶⁶⁾ 그것은 좁은 지역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통신사를 통한 정보의 공개적이고 활발한 그리고 자유로운 교환에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이 면책사유는 원고로 하여금 문제의 명예훼손 기사를 제일 먼저 전파한 이유로 통신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ppleby 사건에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통신사 기사를 사실확인케 하는 의무에 의해서 야기되는 해로운 부담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사실확인 의무가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해칠 것이라고 설시했다. 왜냐하면 그 의무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시간적인 경제적인 재원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⁶⁷⁾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확인의무가 언론사에게 「걱정스러운 자체검열」을 해야 하는 풍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동법원은 설득력있게 피력하고 있다.⁶⁸⁾

「훌륭한 언론」이라면 현지 주민에 관계된 통신사 기사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기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⁶⁹⁾ 이와 비슷하게 한 명예훼손법 전문가는 「언론사가 소재하는 지역의 인물에 관한 통신사의 기사라면 언론사는 기사에 나온 인물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신문에 내거나 방송에 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⁷⁰⁾

그러나 통신사 기사 면책에 대한 판례에 관한 한, 언론기관이 이름있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에 나온 모든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Sullivan 사건 이후의 통신사 기사 면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결인 Appleby 사건은 이점에 있어서 아주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Appleby 사건 담당법원은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기사들은 확인하기가 엄청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들고 경비가 비싸게 먹히는 반면에 먼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한 기사들은 간단히 장거리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⁷¹⁾

언론관계 명예훼손소송에서 통신사기사게재 면책이 그 성공률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것임에 비춰볼 때, 이 면책사유는 비록 아직은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언론기관에게는 하나의 강력한 법적인 무기로서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미국 법원들은 통신사 기사 면책이 적용되는 명예훼손사건에서 언론사에게 매우 빈번하게 약식판결을 내리곤 했다. Sullivan 사건 이후 거의 30년 동안 언론사는 이 면책사유가 관련된 거의 모든 명예훼손사건에서 승소했다.

결과적으로 이 면책사유는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법의 잠재적인 냉각효과를 둔화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봐서 언론사는 AP, UPI와 같이 정평있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통신사 기사 면책이 미국 언론에 끼친 영향은 의심할 것 없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통신사기사 면책을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것은 명성있는 통신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데 있다. 여러 통신사들의 평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명성있는」 통신사의 기준은 앞으로 더욱 많은 판례에 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년 동안에 축적된 통신사 기사 면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 면책이 반드시 AP, UPI, AFP 그리고 로이터 등의 통신사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뉴욕타임스나 LA 타임스 신디케이트와 같은 언론사 신디케이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믿을 만한 신문이나 잡지에 근거한 기사들을 재게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기사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언론의 경우에도 이 통신사기사 면책을 이용해서 명예훼손법의 위협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없이⁷²⁾ 널리 인정받고 있는 외국의 언론으로부터 나온 뉴스 기사를 게재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과 결론

국내외적인 뉴스를 구하는 데 있어 언론기관이 점점 더 통신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미국의 언론은 통신사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보도된 20 개의 명예훼손사건들은 통신사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명예훼손사건에 대응하여 미국의 언론기관들은 효과적으로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를 이용했다. 이 면책은 1933 년에 Layne v. Tribune Co. 사건에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에 의해서 처음 수립되었다. 그것의 주요 목적은 통신사에서 제공한 명예훼손적인 기사게재에 대한 엄격한 책임원칙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의 우선하는 정책적인 정당성은 Sullivan 사건 후에 발전된 명예훼손법과 흡사하다고 할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 통신사 기사 면책사유는 「실질적인 악의」 원칙과 구별 지을 수 있다. 즉 전자는 후자와 달라서 원고의 공적인 혹은 사적인 신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 기사면책이 소송초기에 보다 흔하게 언론사에 대한 약식판결을 제청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13 개 지역에서 명예훼손법상 이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 D.C.,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등이다. 통신사 기사 게재가 면책이 되려면 피고 언론사는 (1) 문제의 기사가 정평 있는 통신사에서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2) 그 기사의 허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3) 피고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 기사에서 허위의 개연성을 느끼게 하는 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4) 그 기사를 게재하는 데 본질적인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1964 년 이후 통신사기사 면책의 성공률은 압도적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면책사유는 약식판결을 구하는 피고 언론사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되어왔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적인 인물이든 공적인 인물이든 관계없이 미국의 언론을 명예훼손사건의 위축효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주표기는 The Blue 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15th ed. 1991)을 참고했다.

1) 통신사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다국적 언론사들이 빈번히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 그 예로 Bachchan v. Indla Abroad Publications Inc., 20 Med. L. Rep. (BNA) 1051 (N.YSuP. Ct. 1992) 사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문은 Kyu Ho Youm 「suing American Media in Foreign Countries」, Hastings Communications & Entertainment Law Journal (forthcoming 1994).

2) 393 S.E.2d 295(N.C. Ct. APP. 1990) , Petition forreview denied,399 S.E.2d 123(N.C. 1990)

3) Id. at 296.

- 4) Id. at 297.
- 5) Id.
- 6) 「News Notes」, Media Law Reporter, 1992 년 1 월 7 일 자.
- 7) Bruce W. Sanford, Libel and Privacy 412(2d ed.1991) .
- 8) 376 U.S. 254(1964) .
- 9) Restatement (Second) of Torts(1977), sec. 611
- 10) 146 So. 234(Fla. 1933) (en banc).
- 11) Universal Service 는 1918 년 William Randolph Hearst 에 의해서 미국의 조간신문을 위해 세워졌다. Robert W. Desmond, Windows of the World 392(1980)
- 12) Layne, 146 So. at 235~236
- 13) Id. at 239.
- 14) Id.
- 15) Id.
- 16) Id. at 239.
- 17) New York Times Co. v, Suillvan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실질적 악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헌법상의 권리보장으로 해서... 연방법상의 명예훼손원칙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 원칙에 의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의 공직에 관한 행위에 관련된 명예훼손적인 허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없다. 만일 문제된 명예훼손적인 말을 <실질적인 악의> -즉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혹은 그것이 거짓이든 아니든 간에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서- 를 갖고서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말이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9~280(1964).

- 18) 1974 년에 미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1 조는 일반에게 중요한 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허위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고 판시했다. 덧붙여서 대법원은 「과실없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한 주법원은 독자적으로 사적인 인물에 대한 언론사의 명예훼손적인 허위를 게재한 것을 배상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고 했다.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1, 347(1974).

- 19) See Memorandum of Law In Opposition to Plaintiff's Motion to Enforce a Foreign Judgment, 30~31, Bachchan v. India Abroad Publications Inc.,

- 20) Med. L. Rep. (BNA) 1051 (N.Y. Sup. Ct. 1992)

- 20) 478 N.E. 2d 721 (Mass. 1985).

- 21) Id. at 725 (citations omitted).

- 22) Id. at 722~23. 문제의 기사에는 원고가 젊은 남자들을 죽여 시체를 그의 집 뜰에 묻었다는 혐의를 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Id. at 723.

- 23) 제 1 심의 하급법원은 피고 언론이 과실로 통신사의 기사를 게재한 것은 아니었고, 그 기사는 수색영장에 관한 진술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것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Id.

- 24) Id. at 725(citations omitted)

- 25) *Id.* at 726.
- 26) *Id.* (citations omitted).
- 27) *Id.*
- 28) *Id.*
- 29) 658 p.2d 312 (Hawaii 1983)
- 30) *Id.* at 322.
- 31) *Id.* at 323.
- 32) *Id.* citing *Waskow v Associated Press*, 462 F. 2d1173(D.C. Cir 1972); *Gay v. Williams*, 486 F. Supp.12 (D. Alaska 1979).
- 33) 271 F. Supp. 364(E.D. Mo. 1967), *affd*, 394, F.2d800(8th Cir. 1968).
- 34) *Id.* at 365.
- 35) *Id.* 이 사건은 원고에 대한 똑같은 AP 통신기사에서 시작된 최소 15 개의 명예훼손소송사건 중의 하나이다. 원고가 AP 기사를 이유로 고소한 14 개의 소송 목록을 참고하려면, *Walker v. Pulitzer Publishing Co.*, 394 F.2d800, 806~807(8th Cir 1968) 을 볼 것. 1967 년에 미 연방대법원은 *Associated Press v Walker* 의 텍사스주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는데 그 이유는 AP 가 원고에 대한 기사를 「실질적인 악의」를 갖고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공적인 인물인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악의」를 입증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Associated Press v Walker*, 388 U.S 130(1967) 참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통신사 기사 면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 면책사유가 텍사스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 사건은 단지 문제의 기사를 제일 먼저 게재한 AP 통신사의 손해책임에 그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 36) 3Med. L. Rep. (BNA) 1508(P.R. 1977)
- 37) *Id.*
- 38) *Id.* at 1512 (emphasis added) (citations omitted)
- 39) 486 F. Supp. 12 (D. Alaska 1979) (applying Alaska law).
- 40) *Id.* at 17
- 41)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1971) 사건에서 미 연방법원은 명예훼손적인 언사가 일반 공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Sullivan* 사건 원칙을 사적인 인물에 대한 허위적인 명예훼손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1974 년 연방대법원은 *Gertz* 사건에서 *Rosenbloom* 사건원칙을 거부했다. See *supra* note 18.
- 42) *Gay*, 486 F. Supp. at 17
- 43) 700 F. Supp. 534(S.D. Ga. 1988) (applying Georgia law). *Brown* 사건은 피고 신문에 게재된 AP 기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기사에는 원고가 연방범죄에 관련된 증인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해서 기소됐다고 잘못 보도되어있었다. *Id.* at 535.
- 44) *Id.* at 537,
- 45) *Id.*
- 46) 667 F. Supp. 1468(S.D. Fla. 1987) (applying Florida law)
- 47) *Id.*

48) 447 N.Y.2d 778(App. Div. 1982).

49) 문제의 기사는 원고가 파는 기념동전이 너무 얇아서 동전에 박힌 글자나 그림들이 사자마자 바로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Id. at 779.

50) Id.

51) See Szalay v. New York American, Inc., 4 N.Y.S.2d 620, 622(App. Div. 1938).

Szalay 사건은 New York American 에 실린 기사에서 원고가 이혼소송사건에서 「불륜적인 잘못」으로 해서 유죄를 받았다는 허위기사와 관계된 것으로 이 기사는 믿을만한 통신사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 Id. at 621.

52) 393 S.E.2D 295(N.C. Ct. APP. 1990)

53) Id. at 297. For a discussion of Mckinney, see supra notes 2~5 and accompanying text.

54) 462 F.2d 1173 (D.C. Cir. 1972)

55) Waskow 사건의 AP 기사는 월남전 반대 운동가인 공적인 인물인 원고가 군징집법을 위반하도록 음모했다는 이유로 해서 보스턴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잘못 보도되었다.

56) Id. at 1176.

57) 365 F.2d 965 (D.C. Cir. 1966), cert. denied, 385 U.S. 1011(1967). 미국의 저명한 신문학자 Douglas Anderson 교수는 그의 1980 년에 나온 Drew Pearson 과 Jack Anderson 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연구에서 Keogh 사건은 「신디케이트 칼럼을 게재하는 미국의 신문들에게 명예훼손소송 사건으로부터의 위협을 크게 줄였다」고 썼다. See Douglas A. Anderson, A 「Washington Merry-Go-Round」 Libel Actions 184(1980).

58) Id. at 973.

59) Id.

60) 709 S.W. 2d 635(Tex. 1986). Bessent 사건은 Times-Herald 신문에 게재된 UpI 기사로부터 생긴 사건이다. 그 기사에서 원고는 혐의자들이 마약을 몰래 지니고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 해서 주공무원의 직책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묘사되고 있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승소 약식판결을 내렸고 텍사스주 고등법원은 「발표되지 않은」 판결에서 그 결정을 인정했다. Id. For the full text of the 「unpublished」 opinion of the Texas Court of Appeals in Bessent v. Times Herald, see Bessent v. Times Herald, 12 Med. L. Rep. (BNA) 1143(Tex. Ct.App. 1985) (not for publication).

61) 사건을 텍사스주 대법원에서 환송 받은 후 1 심 재판의 배심원은 원고패소평결을 내렸다. 문제의 신문기사는 「본질적으로 사실」이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근거였을 것이라고 관계했던 변호인들은 얘기하고 있다. Paul Knisely, counsel for Bessent, telephone interview with author, Jan. 31, 1992; Jack Pew, counsel for Times-Herald, telephone interview with author, Feb. 3, 1992.

62) Bessent, 709 S.W.2d at 635.

63) 「실질적 악의」에 대한 약식판결 증거요건에 관한 Bessent 판결은 1989 년에 파기되었다. See Casso v. Brand, 776 S.W.2d 551(Tex. 1989).

64) Bessent, 709 S.W.2d at 636.

65) see *Brown v. Courier Herald Pub. Co.*, 700 F. Supp. 534(S.D. Ga.1988); *O'Brien v. Williamson Daily News*, 735 F. Supp. 1526 (E.D. Ky. 1990).

66) 미 연방대법원 판사 William Brennan 은 「명예훼손법을 강화하면 바로 자유로운 토론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다.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110.S.Ct.2695, 2715(1990) (Brennan, J., dissenting) (citations omitted).

67) *Appleby*, 478 N.E. 2d at 725.

68) *Id.* at 726.

69) Robert H. Phelps and E. Douglas Hamilton, *Libel : Rights, Risks, Responsibilities* 117(1966).

70) Paul P. Ashley, *Say It Safely* 159(rev. 4th ed 1969)

71) *Appleby*, 478 N.E.2d at 726.

72) See Kyu Ho Youm, 「Fair Report Privilege as a Libel Defense,」 3 *University of Florida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40 n.83(1990) .

□ 건국대 영문학과, 미국 남일리노이대 대학원(신문학 박사)

□ 미국 마이애미 대 신문학교수 역임

□ 편재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월터 크롱카이트신문대학 언론법 교수